

## 제44대 회장, 감사 선거 안내

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, 감사 선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선거일자 : 2021년 2월 17일(수) 오전 10시 (※ 제59차 정기총회일)
2. 선거장소 :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(잠정,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(여의도동))  
※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장소 및 선거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
3.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자격조건 및 등록사항(선거관리규정 제21조, 22조)
  -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
  -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,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(보증채무 포함) 미상환(3개월 이상)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4. 선거인 및 선거권 관련 규정
  - 가. 선거인의 자격(정관운영규정 제13조)
    - ①항 1호. 신규 가입자의 경우 투표인 자격은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입회를 완료한 정회원
    - ①항 1호. 선거일 전년도 12월분까지 회비를 선거년도 1월 15일까지 완납한 정회원
    - ②항. 1년 이상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된다.
  - 나. 선거권(선거관리규정 제19조)
    - ③항 선거권자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일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  - ④항 자격회원은 선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.
5. 기탁금(선거관리규정 제17조)
  - 가. 회장 입후보자: 1,500만원
  - 나. 감사 입후보자: 100만원

## 6. 추천서 교부 및 후보자 등록 일정

- 기간: 2021년 1월 11일(월) 오전 9시 ~ 1월 18일(월) 오후 5시까지
- 제출서류: 후보자 등록신청서, 이력서, 후보자 추천서(회장 입후보자 30인 이상 / 감사 입후보자 10인 이상), 후보자 기탁금 납입영수증 사본, 후보자 서약서, 명함판 사진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.

## 7. 선거공보물 : 선거공보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규격 : A4 양면 이내(컬러) / 210×297(mm)
  - 문안 : ① 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 및 감사 후보(좌측상단에 문구 명기)  
②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(우측 하단에 문구 명기)  
③ 후보자 기호 명기(기호추첨 후 기재)  
④ 후보자의 인적사항(생년월일,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), 공약사항, 사진 등 명시
- ※ 후보자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편집·디자인하여  
2021년 1월 18일(월)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(CMYK, ai/pdf 파일  
300dpi이상) 인쇄용 파일로 제출(기호 공란)
- ※※ 후보자 홍보물(후보자 제작 및 발송)의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1월 18일(월) 오후 5시까지 시안(10부) 제출

## 8. 기호추첨 : 2021년 1월 18일(월) 오후 5시 30분 입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협회 사무처에서 실시한다.

## 9. 선거관리 업무(추천서 교부일부부터 선거일까지)

- ① 평일 - 09:00 ~ 18:00
- ② 토·공휴일 - 휴무

※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정부 지침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.

## [참고 관련 규정]

### ■ 후보자 기탁금(선거관리규정 제17조)

- ① 회장,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시 회장 후보자는 1,500만원, 감사 후보자는 100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② 납입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잘못 납입하였거나 등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
### ■ 추천서 교부(선거관리규정 제23조)

- ①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.
- ② 추천서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, 추천서 교부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■ 후보자 추천(선거관리규정 제24조)

- ①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.
-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회장 후보자는 선거권자 30인 이상, 감사 후보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③ ②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한 추천은 무효이다.
- ④ ②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·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.
- ⑤ 후보자 추천서에는 자격회원의 회사명과 회원명을 표기하고,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 한다.
- ⑥ 추천장의 서식·교부신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■ 후보자 등록(선거관리규정 제25조)

-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17조 ①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2021 년 1 월 5 일

**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**

**위 원 장 김 재 영 (직인생략)**